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웰  
대한민국 06562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5 대명빌딩  
신관 4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6월 18일 (18.06.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180102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1433**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2월 02일 (02.02.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1일 (21.09.2017)

국제특허분류(IPC)  
**B65D 1/08(2006.01)i, B65D 47/18(2006.01)i, B65D 1/32(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아이팩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6월 15일 (15.06.2018)

심사관  
황찬윤  
전화번호 +82-42-481-3347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JP 2005-145465 A (FANCL CORP.) 2005.06.09

D2: KR 10-1554189 B1 ((주)연우) 2015.09.21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가압에 의해 액상 내용물을 압출할 수 있는 합성수지제 튜브로 형성된 튜브본체(2); 튜브본체(2) 일단에 솔더 상에 형성되는 일체형의 대직경통부(34)를 포함하되, 대직경통부(34)의 내부에 조립공간이 형성되며 상단에 조립공간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직경이 넓은 중직경통부(33)가 형성되고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은 소직경통부(32)가 형성되는 구경부(3); 및 구경부(3)의 대직경통부(34) 내측에 결합되어 튜브본체(2)가 가압되어 내압이 상승하면 개방되고 가압 해제시 폐쇄되는 토출완화밸브(4)를 포함하는 액상 내용물을 물방울 형태로 배출시키는 압출 튜브용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단락 [0015]-[0016], [0024]-[0025] 및 도면 1-6 참조).

다만 청구항 제1항은 조립공간에는 튜브 본체 내의 액상 내용물의 배출량을 조절하여 배출로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부로부터 배출로 측으로 점진적으로 넓은 직경을 가지는 조절공이 형성되는 조절체; 및 조절체의 하부에 밸브체가 순차적으로 조립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지만,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튜브네크(200)가 내측에 결합되며, 내용물이 상부로 이동시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배출량 조절관(310)이 구비되는 배출량 조절부(300)(청구항 1 및 도면 1-2 참조); 및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구경부(3)의 대직경통부(34)의 하측에서 조립되는 토출완화밸브(4)(단락 [0016] 및 도면 1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따라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과 인용문헌 D2에 의해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2 종속항: 청구항 제2항 내지 제5항

### 1.2.1 청구항 제2항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2에 개시된 튜브네크(200)의 내측의 폭과 대응되는 폭을 가지는 몸체; 및 몸체의 내부에 밀면이 개방되어 형성되는 공간부가 형성되되, 공간부에는 하부로부터 좁은 직경을 가지면서 상부로 갈수록 넓은 직경을 가지는 배출량 조절관(310)이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면 1-2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과 인용문헌 D2에 의해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2.2 청구항 제3항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토출완화밸브(4)는 상부로 돌출되는 소직경부(62)에 통공(61)이 형성되는 밸브시트부재(6); 및 밸브시트부재(6)의 상부에 배치되어 통공(61)을 가압하여 개폐하는 밸브부재(5)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락 [0017], [0023] 및 도면 2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과 인용문헌 D2에 의해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2.3 청구항 제4항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밸브부재(5)는 밸브시트부재(6)의 소직경부(62)의 외측에 삽입되는 환상기부(53); 및 환상기부(63)의 내측에 가압에 의해 통공(61)을 개폐하는 밸브판(51)을 포함하고, 환상기부(53)와 밸브판(51)은 복수의 소용돌이 모양 탄성편(521)에 의해 연결되되, 각 소용돌이 모양 탄성편(521)과 밸브판(51) 및 환상기부(53) 사이에 복수의 토출간극(57)이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락 [0019], [0025] 및 도면 2-3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과 인용문헌 D2에 의해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 1.2.4 청구항 제5항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개시된 벨브시트부재(6)는 구경부(3)의 대직경통부(34) 내측으로 삽입되면서 대직경통부(34)의 내측면에 형성된 돌기부에 의해 고정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도면 5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과 인용문헌 D2에 의해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PCT 제33조(4)).